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4685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송재봉 · 김남근 · 민병덕  
박정현 · 이연희 · 이용선  
이주희 · 김남희 · 남인순  
이재관 · 이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확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칙수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되었음.

현행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일반 산업기술보다 더 강한 보호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와 벌칙규정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을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포함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및 강화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등).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전략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중전의 제4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6호) 중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7호) 중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을 “이를”로 한다.

4. 전략기술보유자의 계약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전략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  
·유인하는 행위

9. 제12조제4항,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15조에 따른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0조제1항 전단 중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전략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0억원”을 “85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 각 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를 “제15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5조제4호 또는 제8호”를 “제15조제10호 또는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⑦ 제1항 또는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예비·음모) ① 제50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0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의3(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br>-----<br>-----.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u>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전략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u> | 2. -----<br>-----<br>-----<br>-----<br>----- <del>전략기술</del> -----<br>-----<br>----- |
| 7.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                                                                    | 3. -----<br>-----<br>-----<br>-----<br>-----<br>-----<br>-----                       |

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신 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신 설>

이를

4. 전략기술보유자의 계약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전략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

5. (생략)

6.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  
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  
는 행위

<신설>

8. (생략)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  
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  
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신설>

·알선·유인하는 행위

7. (현행 제5호와 같음)

8. 제13조제1항-----

-----

-----

-----

-----

9. 제12조제4항,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산업통상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행위

10. (현행 제8호와 같음)

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

-----

-----

-----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

-----

-----

제15조의2(외국에서의 행위에 대

제50조(벌칙) ①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 각 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5조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한 적용) 제15조에 따른 전략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  
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  
용한다.

제50조(벌칙) ① 전락기술이 외국  
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5  
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  
-----  
-----85억원-----  
-----.

<삭 제>

③ 제15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의-----  
-----  
-----  
-----.

④ 제15조제10호 또는 제11호-  
-----  
-----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생략)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⑦ 제1항 또는 제3항의 미수범  
은 처벌한다.

⑧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제50조의2(예비·음모) ① 제50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0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의3(양별 규정) 법인의 대  
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  
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